

##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에따른건의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 - 208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일자 : 2000. 5. 3

제 출 자 : 형남선 의원외 3인

### 1. 주 문

- 동두천시는 38선을 지척에 두고 최북단에 위치한 소도시로서 인구 74,000여명에 총면적 95.68km<sup>2</sup>중 임야가 67%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 요충의 도농복합형 도시임.  
또한 15,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써 우리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
-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으며, 총면적의 73.4%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 공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
- 더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 공여지 지역은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으며, 군사시설 또한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등, 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시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침해를 받고 있음.
- 이에 동두천시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의 「접경지역의 범위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함.

### 2. 주요골자

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의 「접경지역의 범위」를 20km 이내로 하여 동두천시가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